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1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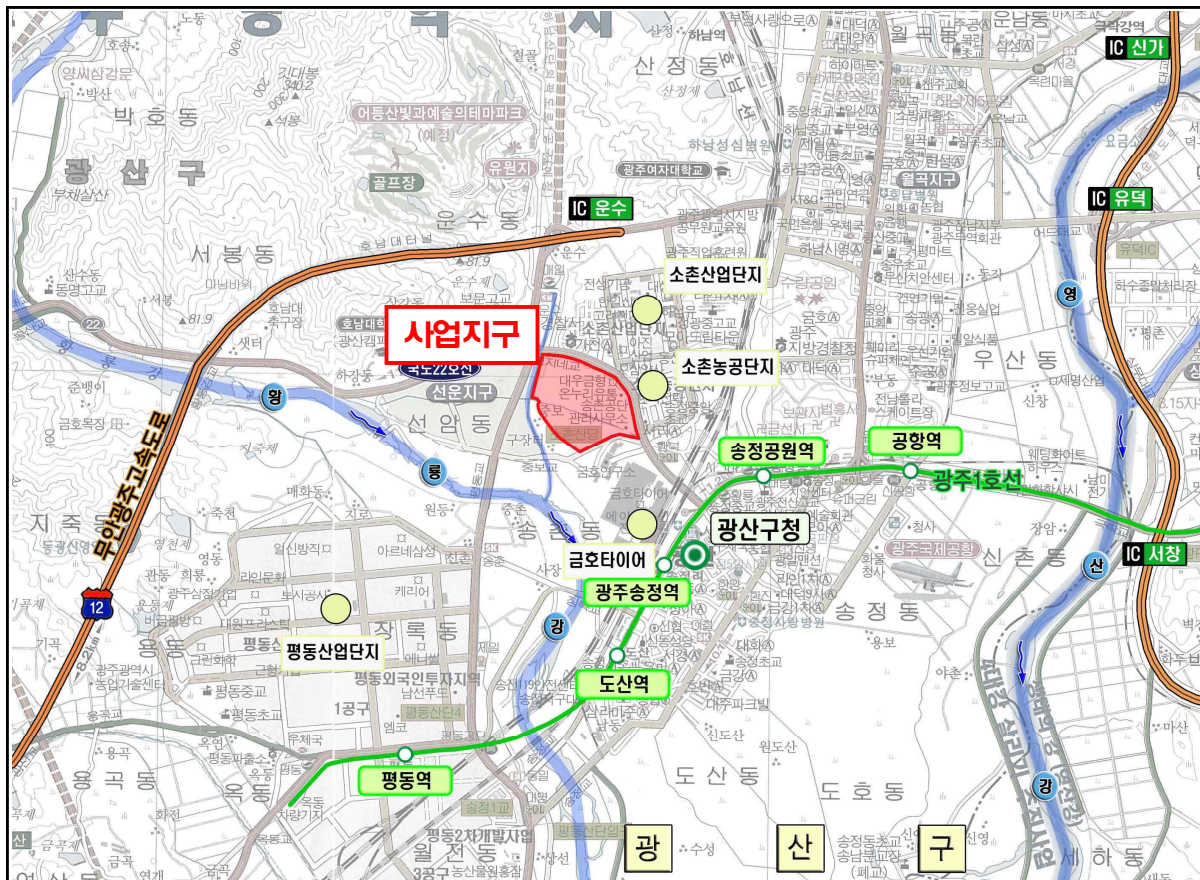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원
- 규 모 : 398,461㎡
- 계 획 인 구 : 7,087인(3,051호)
- 사 업 기 간 : 2018년 ~ 2024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그림1) 사업대상지 위치도

2. 주민 등 의견수렴

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공고

- 공고일 : 2019년 2월 13일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96호
- 공고신문 : 한국일보(중앙일간지), 광주일보(지방일간지)
- 공고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2월 13일 ~ 2019년 3월 15일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문
- 공람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라.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9년 2월 13일 ~ 2019년 3월 22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 공람 및 설명회 공고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96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원
- 사업규모 : 398,461㎡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2월 13일(수) - 2019년 3월 15일(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9년 3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062-960-843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공고

한국일보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10 WWW.HANKOOKILBO.COM 한국일보	光州日報 제20938호 1판 (음력 1월 9일)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2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제20938호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96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원 ○ 사업규모 : 398,461㎡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2월 13일(수) ~ 2019년 3월 15일(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3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062-960-843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96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수동 일원 ○ 사업규모 : 398,461㎡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2월 13일(수) ~ 2019년 3월 15일(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환경생태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2019년 3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및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062-960-843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게시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광산365

365일민원을 한 곳에, 일심을 한 눈에

참여 · 소통

뉴스 · 소식

전자민원

분야별 정보

정보공개

광산구 소개

문화관광

동행정복지센터

뉴스 · 소식

고시/공고/입법

HOME > 뉴스 · 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제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96호

등록일 2019-02-13

담당부서 환경생태과

첨부파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문.pdf

미리보기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공고문(안) (광주선운2 환경영향평가).hwp

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제출서 (광주선운2 환경영향평가).hwp

미리보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새소식

공고

· 입찰공고

· 고시/공고/입법

· 채용공고

· 개인정보보제3차제공

보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타기관소식

무연분묘 개장공고

열린구청장실

김삼호

GO

2.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가.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에 포함하여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 「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참조

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

- 개최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너른마루)
- 참석인원 : 13명(참석자명단 작성기준)



2.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주민의견 제출자 : 총 5명
 - 주민의견 제출서 : 4명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제출서 : 1명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0명
- 공청회 개최 요청자 : 총 4명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제출서를 제외한 주민의견 제출서는 총 4건으로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 주민의견제출서			
강O희	○ 금호타이어 환경, 소음, 공해, 분진 대기측정 시(풍향)을 보고 영향평가 했는지 궁금함	○ 금호타이어 주변에 대기(A-9), 악취(O-2), 소음진동(NV-4)의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김O연	○ 2015년 이후부터 광주 광산구의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8.10.23.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회 도사주택포럼' 관련 기사에 의하면 진미운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님께서 '광주는 전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많으나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주로 광산구와 북구에 집중된 반면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광산구에 위치한 선운2지구 조성의 배경 및 목적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이 동구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사업 대상지는 당초 광산구청에서 광주선운지구에 포함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광산구의 재정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광주선운1지구에서 제척한 지역임. 사업 대상지가 기존 도심지와 신규 택지개발지 사이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민간 건설업체 등에 의한 난개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는 지역으로, 정부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산업단지, 대학교 및 역세권에 인접하여 젊은층(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과 서민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현 위치에 계획하였음	
	○ 현재 선운2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황룡강 일대에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중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지구 인근에서 멸종위기동물인 수달과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회피능력이 우수하여 다른지역으로의 이동회피가 예상되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인간도 적응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안일한 생각은 결국 이동과 회피할 장소를 찾지 못한 동물들의 개체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사업지구 인근 장록습지를 대상으로 '16~'17년 광주광역시 습지생태현황 조사에 대한 문헌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법정보호종 및 장록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김O연	○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 금호타이어로부터 이격거리가 1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금강엑셀루타워의 경우 170m 떨어져 있음에도 입주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악취와 유독가스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선운2지구가 제2의 금강엑셀루타워가 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즉, 이에 대한 철저한 해결 대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요 악취유발원인 금호타이어의 경우 경계부에 연구관리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와 생산출하공장의 이격거리는 약 250m 정도임. 그러나 악취 저감을 위해 사업부지 남측에 공원·녹지를 배치하며, 공원·녹지 높이, 폭원, 다층구조 식재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겠음	
	○ 벤젠의 경우 극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주변 주민밀집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백혈병 발병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선운2지구 조성단지 주변에는 금호타이어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대기질과 수질검사시 벤젠과 같은 오염물질 등도 측정, 그 수치를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향후 건강에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주십시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및 수질 현황조사시 벤젠항목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 대기질의 경우 불검출~1.1μg/㎡로 조사되어 대기질 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수질의 경우 불검출되었음	
	○ 학교 보건법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에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구역 안에서 특정위해시설 건립이 금지되며 특정시설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 이상되는지, 또 계획과 달리 실제 공장운영과정에서 오염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장주변 학교 설립에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양산 어곡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 확보를 위하여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어곡초등학교의 경우 이격거리가 200m 이상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 사업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개별학교의 위치, 크기 및 외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인근 300m 까지 위험요소 등을 조사하고 검토·제시함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김O연	○선운2지구 주변으로 중보산업에서 한국아델리움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9.03.08.일에는 금호타이어 이전에 따른 금호타이어 부지 활용 방안에 따른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중보산업의 한국아델리움 조성이 먼저 진행되어 아델리움에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입주민으로부터의 민원(소음 및 진동)이 예상됩니다. 선운1지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리버프라임 공사시 인근 아파트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운2지구가 먼저 조성되어 아델리움 및 금호타이어 공사가 진행 될 경우 반대로 선운2지구 입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현 계획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이 아델리움 및 금호타이어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학습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저감방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시행될 선암동 한국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시행시 개별적으로 환경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본 사업에 대한 건축물 철거 등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분야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음	
	○선운2지구 조성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소음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운수교차로의 경우 좁은 차로와 심하게 굴곡진 회전구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운2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량은 더 증가 할 것인데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성 확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운2지구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통하여 실제 교통량 조사, 장래 교통량 예측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 사업지구와 인접한 어등대로의 교통서비스 수준은 다소낮은(C~F)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 기하구조 개선, 신호체계 최적화 등을 통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임	
민O식	○선운1차 개발시 제외된 농지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재청구하오니 재심사 의뢰합니다.	○선운2지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이O중	1. 수용의 제한 ㉠ 토지수용의 목적은 특별한 목적물이 아니면 해당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즉 비대체적 성질의 대상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업계획은 행정편의의 주의로 되어있습니다. ㉡ 상기 사업지구 398,461㎡ 내에 본인토지 (소촌동 631-17) 340㎡를 대체 할 토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본인토지를 수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5조 수용의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토지 재산권 침해의 정당화”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토지를 상기 사업에서 제척해 주기 바랍니다. 본인토지가 수용되지 아니하면 상기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면 그 사유를 통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주택지구의 선정)에 의거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 객관적 경계에 따라 설정하게 되어있으며,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시설(대로1-8호선)을 경계로 설정되어 사업의 특성상 특정 건축물에 대한 제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이0종	2. 토지 수용의 형평성 ㉠ 운수동 41-17 (대) 등은 126-1 (전) 과의 사이에 481-49 (천)을 사이에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업에서 제척시키고, 본인 토지 소촌동 631-17 (대)은 632-10 (대) 과의 사이에 632-5 (구) 632-16 (구) 등을 사이에 끼고 있어 상기사업지구와 별개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인토지 631-17 (대) 도 41-17 (대) 등과 같이 지구지정에서 제척시켜 주기 바람에 제척이 불가능시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수동 41-17, 126-1의 부지는 구역 설정 당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경계로 포함되어 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임	
	3. 공공시설로써의 주유소 설치 ○본인토지 일부와 하수구위로 주유소부지가 설정 되어 있는데 이부지가 주유소 설치 인허가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와 이부지의 주유소가 공공시설요건으로써 타당한지 여부를 통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해당부지의 하수구 관거는 추후 신설되는 도로 하부로 이설될 계획이며, 주유소 또는 충전소는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상 떨어진 곳으로부터 배치 할 수 있어 위치는 적정함	
황0훈	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서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필요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광주 광산구의 경우 2015년 이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회 도시주택포럼'에서 진미윤 LH공사 토지주택 연구원 박사님께서 '광주는 전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이 가장 많으나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주로 광산구와 북구에 집중된 반면 수급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없다'고 분석했다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이 광주 동구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업지구는 당초 광산구청에서 광주선운지구에 포함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광산구의 재정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광주선운1지구에서 제척한 지역임. 사업 대상지가 기존 도심지와 신규 택지개발지 사이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민간 건설업체 등에 의한 난개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는 지역으로, 정부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에 따라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산업단지, 대학교 및 역세권에 인접하여 젊은층(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과 서민 및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현 위치에 계획하였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황0훈	2. 현재 선운2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황룡강 일대에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추진 중임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립습지센터에서 정밀조사를 통해 장록습지에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식물 820여종이 살고 있다면서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하천과 습지 보존은 세계적인 추세로,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원시적인 자연환경이 그대로 간직된 장록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동물인 수달과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는데 회피능력이 우수하다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회피가 예상되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인간도 적응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이동과 회피할 장소를 찾지 못한 동물들의 개체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록습지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적보호종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업지구 인근 장록습지를 대상으로 '16~'17년 광주광역시 습지생태현황 조사에 대한 문헌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법정보호종 서식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법정보호종 및 장록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3. 토지이용계획도를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 금호타이어로부터 이격거리가 150m이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 금강엑슬루타워의 경우 17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끊임없이 악취와 유독가스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위치에 자리한 선운2지구 제2의 금강엑슬루타워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실제 공장 운영과정에서 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고 가능성(금강엑슬루타워 옆 한국타이어공장의 경우 2014년 화재 사고)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장주변의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유해물질 성분검사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요 악취유발원인 금호타이어의 경우 경계부에 연구관리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와 생산출하공장의 이격거리는 약 300m 정도임. 그러나 악취 저감을 위해 사업부지 남측에 공원·녹지를 배치하며, 공원·녹지 높이, 폭원, 다층구조 식재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겠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황O훈	4. 벤젠의 경우 극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백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 주민 밀집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백혈병 발병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광주 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단지 주변에도 금호타이어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처방안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되고, 대기질과 수질등의 검사시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 성분검사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며, 그 수치를 공개하여 주민들에게 향후 건강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시에도 주기별로 유해물질 성분검사 및 수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및 수질 현황조사시 벤젠항목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 대기질의 경우 불검출~1.1μg/ m^3로 조사되어 대기질 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수질의 경우 불검출되었음	
	5. 학교 보건법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화구역 안에서 특정위해시설 건립이 금지되며, 특정시설에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나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시설이(이용계획안에서 특히 특수학교시설) 금호타이어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이상 되는지? 또 계획과 달리 실제 공장운영과정에서 오염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장주변 학교 설립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양산 어곡초등학교의 경우 산업단지로부터 이격거리가 200m 이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 이후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매캐한 냄새와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을 제기되었고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전을 결정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학교의 위치가 금호타이어 및 산업단지로부터 최대한 멀어질 수 있도록 위치 변경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업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별도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개별학교의 위치, 크기 및 외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인근 300m까지 위험요소 등을 조사하고 검토·제시함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황O훈	6. 2019.03.08. 금호타이어 이전에 따른 금호타이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선운2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금호타이어 부지 공사가 진행 된다면 그로 인해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선운1지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리버프라이م 공사시 인근 아파트로부터 비산먼지,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저감방안 또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 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또한 선운2지구 입주 전 금호타이어 부지 개발이 진행된다면 현 조건과 대기, 소음 및 진동이 달라질 것이며, 또한 공사 중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도한 재조사 및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금호타이어 이전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대책을 마련할 것임	
	7. 선운2사업지구 서남쪽으로 중보산업에서 한국이텔리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보산업에서 진행 중인 한국이텔리움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입주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원이 예상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반대로 선운2지구가 먼저 조성이 된다면 현 계획상 인접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생들이 먼지와 소음 및 진동의 악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향후 시행될 선암동 한국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시행시 개별적으로 환경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본 사업에 대한 건축물 철거 등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분야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음	
	8. 선운지구 개발 시 금호타이어의 환경문제로 선운2지구 지역이 제외되고 현 선운1지구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운1지구 개발시기와 같이 여전히 금호타이어가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선운1지구 개발당시 발생한 환경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근거인데 현재 환경기준이 지구지정(97.07.28) 및 지구지정해제(01.12.26)되었던 시기보다 더 강화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개발허가가 승인된 것은 행정상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선운2지구 입주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광주선운2지구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기존 도심지와 신규 택지개발지 사이에 위치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민간 건설업체 등에 의한 난개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는 지역으로 지구지정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한 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의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어등대로변(NV-7 지점) 소음이 높고, 그 지역에 계획된 도로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어등대로변은 자동차 통행에 의해 소음도가 높음 ○해당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계획되어 있음	
	○성원공업사앞 삼거리(NV-7지점)의 출입구가 없음. 어등대로는 출퇴근시간 차가 막히는데 광주선운2지구 주출입구 위치 재검토	○사업지구 주출입구 위치를 재검토하여 성원공업사 앞 삼거리에 주출입구를 계획하였음	
	○사업지구 북서측에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운수천 수질에 대한 방안과 주변지역 소촌농공단지, 소촌산업단지 등 악취와 수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시행될 북서측 리조트계획을 시행하면서 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됨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및 수질의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기존 송정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광주선운2지구 오폐수처리문제는 연계할 수 있는지요?	○사업지구 외부 오수처리 문제는 관할 지자체 하수처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광주선운2지구 북측에 완충녹지와 방음벽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겨울철 빙판길 피해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지구 북측 완충녹지와 방음벽은 도로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이며, 방음벽 부분은 불가피하게 설치할 계획이고, 빙판길 방지를 위한 투명 또는 조합형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 할 예정임	
	○광주선운2지구와 북측 송정주택간 어등대로변 방음벽으로 차단된 것인가요? 선운2지구와 연결된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지구 주출입구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재검토하여 주출입구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하였음	
	○선운1지구와 선운2지구의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운1지구와 선운2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음	
	○광주선운2지구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가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되지않나요?	○특수학교와 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정 배치하였음	
	○저소음포장은 영구적인것인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소음 저감대책을 재수립하여 최적으로 저소음포장을 수립하지 않았음 - 저소음포장은 향후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음	